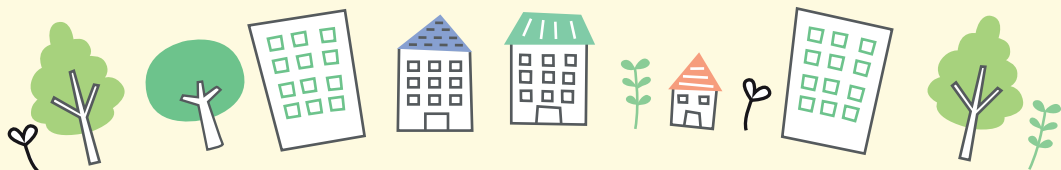


2019 서울시 대체교사 지원사업 안내서



2019 서울시
대체교사 지원사업
안내서



CONTENTS

2019 서울시 대체교사 지원사업 안내서

Ⅰ 대체교사 지원사업안내	3
Ⅱ 어린이집 이용방법	09
Ⅲ 대체교사 지원사업 공금증	23
Ⅳ 부록	29



대체교사 지원사업 안내



01.

서울시 대체교사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요!



서울시 대체교사 지원사업이란?

어린이집에 대체교사를 지원하여 보육교사가 연차, 가족상, 보수교육, 병가 등을 마음 편하게 사용하고 재충전의 기회 및 자기개발을 하도록 도와 드립니다.

본 사업은 인력파견과 인건비 지원으로 이루어지며 보육교사 휴가에 대한 보육 공백을 최소화시켜 어린이집에서 지속적으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서울시 대체교사 인력 지원과 인건비 지원

❖ 대체교사 인력 파견 지원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를 고용하여 필요로 하는 어린이집에 인력을 무료로 파견 지원합니다.

❖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고용한 대체교사의 유희인력이 없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직접 채용하고, 그 인건비를 자치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81,200원/일 지원)



인건비지원은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의 인력파견지원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잠깐, 대체교사 지원절차를 한눈에 알아보아요!



02.

대체교사에 대해 알아보아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대체교사를 소개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대체교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개채용으로 선발한 유능하고 능력 있는 보육교사입니다.



서울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어린이집에 대체교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요가 집중되는 휴가철(7월·8월), 보수교육 기간,
결혼이 많은 시기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교사 보육업무 범위가 궁금해요

✿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업무는 그대로!

대체교사는 전반적인 해당 반 보육과정을 운영하며 등·하원 지도, 영·유아보육, 일지 작성, 교실과 담당 구역 청소 등의 업무를 하게 됩니다.

보육의 연계성을 위해 보육계획은 담임교사가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실질적인 운영은 대체교사가 영·유아의 흥미·욕구와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보육계획을 수정·보완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대체교사의 구체적인 업무분장은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체교사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대체교사의 근무시간은 1일 9:00~18:00(근무시간 내 1시간 휴게시간 포함) 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대체교사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업무 특성상 매번 다른 어린이집을 지원하기 때문에 안정된 보육을 위해 첫날은 근무시작 시간 전에 더 여유 있게 출근하여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어린이집 환경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다른 날도 근무시작보다 일찍 출근하여 수업 준비 및 아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휴게시간 관련안내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의 현장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대체교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Tip

근로시간 및 휴게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4조

제50조(근로시간)

-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2.1.>제54조(휴게)

제54조(휴게)

-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chapter 2

어린이집 이용방법



01. 지원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구분		국·시비 지원		
지원대상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 (보육교사, 특수교사)		
제외대상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원장 및 대표자, 보조교사 등		
상시	1	보수교육 (직무교육 우선 지원)	5일 (최대 10일)	사전 신청
	2	연가 (연차 유급휴가), (본인 결혼 우선 지원)	1~10일 (최대 10일)	
	3	예비군 훈련	훈련 기간	
건강검진		1일		
긴급	최우선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기간 제한 없음	수시 신청
	가족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본인 질병 등 사고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1~5일 (최대 10일)	
	모성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일 (최대 3일)	
		유산 (~11주미만(5일)/12~15주(10일))	5일 (최대 10일)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1일 (최대 3일)		
신청	파견	보건복지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시비지원		■ 지원대상 : 반담임 보육교사(반담임 시간제 보육교사, 특수교사) 및 교사 겸직원장 ■ 제외대상 : 대체교사, 보조교사,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대표자 ■ 지원기준 - 서울시보육서비스지원센터 국공립보육교직원 교육(재교육은 지원제외) - 갑작스러운 사고 등 예기치 못한 보육공백 ■ 신 청 : 파견 서울시포털서비스 인권비 지원 자치구		

- 출산 휴가는 대체교사 지원 대상에서 제외(파견 및 인건비 지원 불가)
 - 우선지원대상사업장(총 근로자 100인 이하 시설)의 출산 휴가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90일간 출산전후 휴가급여가 지급되므로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교사 인건비는 어린이집에서 부담
 - 다만,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총 근로자 100인 초과 시설)에는 최초 60일의 범위 내에 대체교사 지원 가능
- ※ 위의 경우에도 90일 중 마지막 30일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인건비가 지급되므로 대체교사 지원 불가

대체교사 인력 지원 및 인건비 지원 조건은 담임교사가 반드시 유급휴가여야 합니다. 담임교사가 무급으로 휴가를 가고, 대체인력 및 인건비 지원을 받는다면 모든 지원비는 환수하게 됩니다.



02. 신청일은 어떻게 되나요?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인력 지원 신청기간

대체교사 인력지원 신청은 2개월마다 정해진 기간에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지원시기	신청기간	배치결과
1회기	1월, 2월	2018년 12월 01일 ~ 2018년 12월 20일	신청기간 마감 후 1주일 이내
2회기	3월, 4월	2019년 02월 01일 ~ 2019년 02월 20일	
3회기	5월, 6월	2019년 04월 01일 ~ 2019년 04월 20일	
4회기	7월, 8월	2019년 06월 01일 ~ 2019년 06월 20일	
5회기	9월, 10월	2019년 08월 01일 ~ 2019년 08월 20일	
6회기	11월, 12월	2019년 10월 01일 ~ 2019년 10월 20일	

※ 긴급사유 대체교사 신청기간

기본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보육공백(교육, 연차 등)에 대해서는 2개월마다 정해진 기간에 사전 신청하되 갑작스러운 병가와 가족상, 모성보호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발생한 보육공백의 경우는 유선·fax를 통해 수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긴급 사유 발생 시 관할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배치된 인력에 따라 선착순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대체교사 인건비지원 신청기간

대체교사 인건비지원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근무환경개선편비: 월 15일 이상 근무한 대체교사도 지원가능
 2019년 보육사업안내서 430p「교사근무환경개선편비 및 교사겸직원장 지원」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도 지원 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가능

13



🖥️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iseoul.seoul.go.kr)

≫ 대상 반담임 보육교사(반담임 시간제 보육교사, 특수교사) 및 교사검직원장

≫ 지원 사유 보수교육, 연차휴가, 건강검진, 예비군훈련, 긴급사유(아동학대, 본인질병·사고, 가족상, 모성보호 등), 기타사유



📞 긴급 사유 발생 시 관할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유선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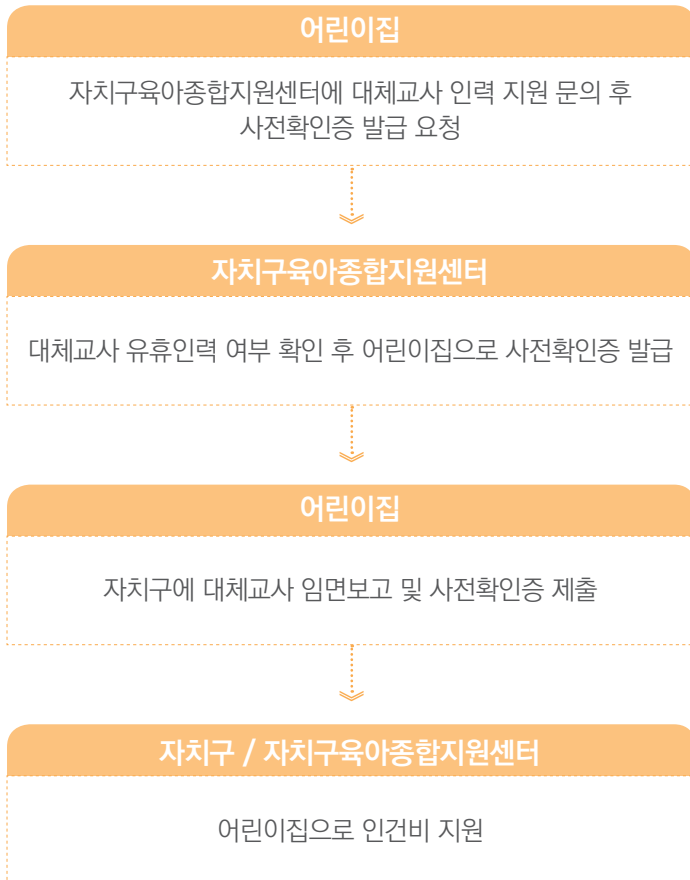
≫ 대상 반담임 보육교사(반담임 시간제 보육교사, 특수교사) 및 교사검직원장

≫ 지원 사유 아동학대 후속조치, 본인질병·사고, 가족상, 모성보호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에서는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로부터 대체교사 인력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사전확인증을 발급받아 개별적으로 채용한 대체교사의 인건비를 자치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체교사 허위신청 시 패널티 적용

보육교사의 연차나 교육, 병가, 경조사 등으로 보육공백이 발생 될 시 대체교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기준 외에 허위 신청 등 부적절한 사유로 대체교사를 신청하여 대체교사가 필요한 어린이집에 지원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패널티 적용사유

- 1) 대체교사와 대체교사 신청한 현 보육교사가 동시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 2) 지자체 대체교사(인건비 지원)와 이중지원 받은 경우
- 3) 퇴사한 교사로 대체교사를 신청한 경우



아동학대 후속조치로 인한 면직인 경우 신청 가능

- 4) 기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허위 사유로 신청한 경우 등)

❖ 패널티 적용

- 1) 적발즉시 지원 중단 및 해당회기 신청 모두 취소
- 2) 1회 적발 시: 다음 회기 대체교사 신청 시 최하위 우선순위 배치
- 3) 2회 이상 적발 시 : 다음 2회기 대체교사 신청 불가

04.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안내서」와 업무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월간 · 주간 · 일일 보육계획안 등)를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로 대체교사가 근무하기 일주일 전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안내서」 양식은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로부터 지원 확정 안내를 받으실 때 대체교사 정보 및 협조사항과 함께 보내드립니다.

대체교사 업무에 관한 어린이집 안내서(예시)			
(어린이집 제출용)			
어린이집명	어린이집		어린이집 원장
전화번호	(어린이집) (휴대폰)	이메일 주소	
주 소			
신할 표준고나	담당인명 직 현할 _____ 한 (한 _____)		
구 분			
주 주 내 용 (대체교사명 신청한 교사가 직접 작성 하도록 함다.)			
보육 시 유의사항 (구의사항 및 특성)	• 대체교사에게 알파하고 싶은 영아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영아는 나열해 정호 기록하기)		
아일 관리사항			
알대·의 어린이집 시공을 이용 방법			
기타 (주인할사항 등)			
어린이집 교사사항	• 대체교사가 근무하는 한의 영유아에게 이틀표 작출 요청		

* 담당인명란에서는 업무분장, 수업분장, 수업질량명, 자료보조, 인사특고과 인일, 주의사항, 주
간제와 등 작한 기일을 작호기 하십시오.

〈어린이집 안내서〉

보육계획안 및 놀이감 제공은 짧은 기간 동안 근무하는 대체교사가 질 높은 보육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대체교사 근무 중

첫날 근무가 시작되기 전, 대체교사에게 오리엔테이션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담긴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대체교사가 좀 더 책임감과 소속감을 느끼며 근무할 수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전달 및 논의 되어야 하는 사항

❁ 어린이집 현황

- 보육철학 및 프로그램의 특징
- 어린이집의 물리적·인적 환경

❁ 대체교사 업무

- 지원학급 연령 및 특성
- 영·유아 출석부 및 명단, 개별 특성
- 보육계획안 작성
- 일지 및 알림장 작성 안내
- 학부모와의 관계
- 등·하원 지도 방법
- 급·간식 지도 방법
- 약물 투약 시 주의사항

❁ 기타

- 근무 및 휴게시간
- 그 외 어린이집 특성에 따른 근무 시 유의사항

오리엔테이션 자료 작성은 예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교사지원 시 오리엔테이션 자료 예

대체교사 근무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1. ○○어린이집 현황

- 1) 원훈: 건강한 어린이, 더불어 함께하는 인성이 바른 어린이,
창의적인 생각으로 꿈을 키우는 어린이
- 2) 인원: 영유아 00명, 교직원 00명(담임교사 00명 포함)
- 3) 시설현황
 - 1층: 보육실(만0세~만2세), 조리실, 교사실(보건실), 원장실, 소모품실
 - 2층: 보육실(만2세, 만4,5세), 유희실, 교재실
 - 3층: 보육실(만3세, 만5세), 교재실
 - 실외: 모래놀이터, 대근육 놀이터, 텃밭
- 4) 등·하원방법: 도보, 통학버스

2. 대체교사 업무내용

- 1) 담당연령: 만4세(아람반, 2층 위치), 유아 20명
- 2) 업무내용: 담당반의 전반적인 보육업무 및 담당 보육실 및 사용공간 청결
 - 등원 전 준비(교실환기, 음용수 준비, 일과 수업준비 등)
 - 담당반의 일과운영: 별지 참조
 - 일과 후 제출서류(보육일지, 안전점검일지, 등하원상황표)
- 3) 영유아 개별특성: 별지 참조
- 4) 학부모와의 상담
 - 파트너 교사가 있는 경우: 영유아 관찰 내용을 파트너 교사에게 알림
 - 파트너 교사가 없는 경우: 영유아 관찰 내용 중, 학부모님께서 궁금해 하는 부분을 사실대로 알리고, 수첩으로 문의가 있는 경우 주임교사와 상의 후 안내



Tip

대체교사지원 시 오리엔테이션 자료 예

5) 통학버스 등·하원 지도 방법

- 등원 지도: 명단을 확인하여 등원여부를 확인함(별지 참조).
- 하원 지도: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명단을 확인, 총별 모이는 장소로 이동

6) 투약방법

- 투약의뢰서가 있는 경우에만 투약 가능

3. 근무 및 휴게시간

1) 근무기간: 0월0일 ~ 0월0일

2) 근무시간: 09:00 ~ 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3) 휴게장소: 1층 교사실 또는 어린이집 유희 공간

(어린이집 외부로 나갈 경우에는 보고 후 휴게시간 사용)

4. 근무 시 유의 사항

1) 안전사고 발생 보고

-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보고(파트너교사, 옆반 교사, 사무실)
- 일과 운영 시 문의사항이나 어려움이 있는 경우, 즉시 지원 요청
만4세 하늘반 교사(원내 203번), 선임교사(원내 100번), 원장(원내 106번)

2) 퇴근 전

- 일과진행 결과에 대하여 주임교사에게 구두 보고(아동 및 학부모 관련, 어려웠던 일 등)
- 익일 보육을 위한 준비(수업 관련, 보육실 및 화장실 청소)

3) 옷차림

- 보육활동 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단정한 옷차림
- 가급적 앞치마 사용은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청결하게 사용

00어린이집(02-0000-0000)

대체교사 근무 후

대체교사가 근무를 마친 뒤, 대체교사를 신청했던 보육통합정보시스템과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에서 평가지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지 작성은 지원이 끝난 시점으로부터 일주일 이내로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에서 작성해주시는 설문지는 대체교사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운영 및 지원 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의견을 적어주시더라도 어린이집에게 불이익이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소통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솔직한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설문지

(어린이집용)

안녕하십니까? 「대체교사 지원사업」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이번 「대체교사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향후 사업의 지속적으로 추진에 나가는 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I. 「대체교사 지원사업」에 대한 설문입니다. (해당란에 V표시를 해 주십시오.)

1. 설문지 작성자 ☐ 어린이집 원장 ☐ 대체교사 ☐ 기타: _____

2. 어린이집 유형: ☐ 국공립 ☐ 사립유치원 ☐ 민간 ☐ 가정 ☐ 직장 ☐ 병설·단체 등

3. 어린이집 별칭: ☐ 20인 이하 ☐ 21 ~ 40인 미만 ☐ 41 ~ 80인 미만 ☐ 81인 이상

4. 보육교사 수: ☐ 5인 이하 ☐ 6인 ~ 10인 미만 ☐ 10인 ~ 20인 미만 ☐ 20인 이상

5. 대체교사 지원사업의 만족도: ☐ 매우 만족 ☐ 만족 ☐ 중립 ☐ 불만족 ☐ 매우 불만족

6. 만족한 이유: ☐ 행정적 지원 ☐ 인건비 지원 ☐ 업무량 감소 ☐ 업무량 증가 ☐ 업무량 변화 없음

7. 불만족이라면 이유: ☐ 인건비 지원 ☐ 업무량 지원 ☐ 업무량 변화 없음

8. 사업 참여에 따른 변화: ☐ 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 ☐ 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 ☐ 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

9. 대체교사 지원사업의 필요성: ☐ 있다 ☐ 없다

10. 기타 사항 (100자 이내)

II. 「대체교사 지원사업」 지원된 대체교사에 관한 설문입니다. (해당란에 V표시를 해 주십시오.)

11.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에게 제공한 사항: ☐ 업무 지원 ☐ 업무량 지원 ☐ 업무량 변화 없음

12. 지원된 대체교사의 만족도: ☐ 매우 만족 ☐ 만족 ☐ 중립 ☐ 불만족 ☐ 매우 불만족

13. 만족한 이유: ☐ 인건비 지원 ☐ 업무량 지원 ☐ 업무량 변화 없음

14. 불만족이라면 이유: (100자 이내)

구분	문항	매우 만족	만족	중립	불만족	매우 불만족
근로 제도	1. 대체교사의 근무시간을 보장해 주었는가?					
	2. 대체교사의 근무시간을 보장해 주었는가?					
	3. 대체교사의 근무시간을 보장해 주었는가?					
수업 관련 사항	1. 대체교사의 근무시간을 보장해 주었는가?					
	2. 대체교사의 근무시간을 보장해 주었는가?					
	3. 대체교사의 근무시간을 보장해 주었는가?					

〈설문지-어린이집용〉



평가지 작성방법안내

보육통합정보시스템(www.cpms.childcare.go.kr)로 신청



평가지 작성을 완료하시면 설문지N이 설문지Y로 표시됩니다.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iseoul.seoul.go.kr)로 신청



평가지 작성을 완료하시면 업무평가지 미작성이 업무평가지 작성으로 표시됩니다.



chapter 3

대체교사 지원사업 궁금증



01. 대체교사 • 지원사업 Q&A



대체교사 지원사업 Q&A



Q 육아종합지원센터로부터 대체교사를 지원받으려고 합니다. 무료인가요?

A

대체교사지원사업은 정부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의 부담금이 없습니다.



Q 긴급 사유에 대해서는 어디로 신청하면 되나요?

A

서울시 25개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긴급사유에 대해 대체 교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긴급 사유 발생 시 관할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신청 문의하시기 바라며, 배치된 인력에 따라 선착순 마감될 수 있습니다.



Q 지원일수에 토요일, 일요일도 포함되는 건가요?

A

지원일수에 토요일, 일요일은 포함되지 않으나, 주중 공휴일은 지원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가족상의 경우는 주중공휴일도 지원일수에 포함하지 않고 지원됩니다.





Q 난임치료 시에도 대체교사 지원이 가능한가요?

A 2019년부터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등 난임치료에 대해 1 ~ 3일까지 대체교사 지원이 가능합니다.



Q 대체교사 지원사업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아 대체교사를 채용하려고 하는데 연령제한이 있나요?

A 어린이집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아 대체교사를 채용할 시 인건비 보조금 지원 연령 상한 기준에 따라 만 60세까지 채용 가능합니다.



Q 대체교사에게 보육실 이외의 대청소를 부탁해도 되나요?

A 대체교사도 지원기간 동안은 어린이집의 일원으로 담임교사 업무에 최선을 다하지만, 매주 다른 환경, 낯선 분위기, 경계하는 아이들과 만나야하는 대체교사에게 적응 시간도 없이 과도한 청소와 업무 요구는 자제 부탁드립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어린이집의 일정에 따라 청소나 다른 업무가 이루어져야 한다면 사전에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로 상의해 주셔서 사전협의 하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Q 대체교사에게 차량 및 투약 지도를 부탁해도 되나요?

A 대체교사는 아이들의 성향과 이름을 아직 파악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투약의뢰서가 없는 투약지도와 차량탑승, 차량지도는 하지 않습니다. 짧은 근무의 특성상 아이들의 안전과 불미스러운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기 위함이니 어린이집의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Q 대체교사를 지원받고, 해당 보육교사는 출근해서 다른 업무를 해도 되나요?

A 대체교사를 지원받고 해당 보육교사가 업무를 하는 것은 휴가가 아닌 근무로 간주되어 이종지원에 해당되므로 대체교사 지원이 중단되며, 어린이집은 패널티를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대체교사를 지원받기로 한 보육교사가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Q 대체교사지원을 중단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어린이집은 대체교사 지원중단을 받아야하는 사유가 있다면 지원 중단요청서를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로 제출하여 지원을 중단 받을 수 있습니다.





Q 보육교사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발생한 보육공백에도 대체교사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대체교사는 현재 어린이집에 임용되어 있고 반담임을 맡고 있는 보육교사에 한해서 지원됩니다. 퇴사한 보육교사는 대체교사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아동학대 후속조치로 인한 면직자의 경우에는 대체교사 지원이 가능합니다.



Q 총 근로자가 100인이 초과되는 어린이집입니다. 보육교사의 산전 후 휴가(90일)에 대해서 대체교사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고용보험에서 정한 우선지원대상사업장(총 근로자 100인 이하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최초 60일의 범위 내에서 대체교사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90일 중 마지막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인건비가 지급되므로 대체교사 지원 불가)

하지만, 장기간지원을 할 수 있는 유휴인력 상황을 고려해야 하므로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와 사전에 논의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지원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연초 예산 작성 시 산전 후 휴가자의 대체교사 인건비를 책정해야 합니다.





02. 육아종합지원센터 연락처



육아종합지원센터	전화	팩스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02)772-9814-9	02)772-9820
강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	02)546-1735~7	02)511-1728
강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02)486-3516	02)484-9255
강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02)994-7480~1	02)904-7480
강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02)2064-2730~2	02)2064-2733
관악구육아종합지원센터	02)851-2834~5	02)851-2846
광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02)467-1827	02)467-1880
구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	02)859-5678	02)859-5511
금천구육아종합지원센터	02)894-2264~5	02)805-1835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	02)930-1944	02)930-1945
도봉구육아종합지원센터	02)3494-3341~2	02)3494-3343
동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	02)2247-5843~5	02)2237-5801
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02)823-4567	02)823-4586
마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02)308-0202	02)305-0006
서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	02)3217-9550	02)3217-9551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	02)598-9340	02)2155-8681
성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02)499-5675~6	02)499-5675
성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02)918-8080	02)918-8083
송파구육아종합지원센터	02)499-0505	02)449-0535
양천구육아종합지원센터	02)2646-7790~1	02)2646-7793
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02)833-6022	02)833-6021
용산구육아종합지원센터	02)749-9673~4	02)749-9675
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	02)351-3629,3630	02)351-3649
종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	02)737-0890	02)737-0898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02)2263-2626	02)2279-7294
종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02)495-0030~1	02)495-0036



chapter 4

IV 부록



서울시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 위한 기타사업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사업

1) 보조교사

*국비지원 보조교사 기준(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p.436 참조)

- 지원대상
 - 장애아 현원 6명 이상 보육하는 전문/통합 어린이집
 - 평가인증 유지, 영아반 2개이상운영, 정원충족률 70%이상인 어린이집
 - ※ 다만, 유아반이 2개 이하인 어린이집이 평가인증 유지, 영·유아반 2개 이상, 정원충족률 70% 이상일 때 지원 가능
- 지원인원: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각1명 지원, 아래의 ①~②에 해당하는 경우 1명을 추가지원(1개소당 최대 2명 지원)
 - ① 장애아 현원 12명 이상 보육하는 전문/통합 어린이집
 - ② 영아반 6개이상 운영하는 어린이집(평가인증 유지, 정원충족률 70%이상)

*시비지원 보조교사 기준

- 지원대상: 국비지원 보조교사 기준을 미충족하여 보조교사를 지원받지 못하는 어린이집
 - ※ 유아반 3개 이상 제외
 - ※ 시비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선에서 각 자치구별 상황에 맞게 우선 순위 선정 가능
- 지원 조건: 서울시 어린이집관리시스템 및 클린카드 이용 어린이집
- 지원인원: 국비지원 인원과 동일(국비지원 중복불가)

✿ 근로조건 및 업무내용

- 어린이집과 보조교사의 협의에 의해 근무시간 연장하여 근로계약 및 근무 가능
(연장시간에 대한 인건비는 어린이집에서 부담)
- 인건비는 1일 4시간(월~금, 주20시간) 근무 시 월 973천원(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업무내용
 - 평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영아반 담임교사의 보육업무가 집중되는
시간에 우선 배치 되어 보육·놀이·학습·급식 등 보조 업무를 수행
 -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한해서 담임교사의 보육업무 전담가능
 - 담임교사의 근무중 휴게시간(낮잠시간 등 원장과의 협의시간)
 - 휴게시간 외 담임교사의 외출, 조퇴 등 1일 미만의 공백(담임교사 업무 대행으로
연장 근로발생 시 인건비는 어린이집에서 부담)





2) 보육도우미

❁ 지원대상: 민간·가정·협통 어린이집(현원 40인 이상 서울형 제외)

※ 경과규정: 국공립 및 현원 40인 이상 서울형어린이집은 개정지침에 의거 보육도우미 미지원대상이나, 종전지침에 따라 보조교사 대신 보육도우미를 선택하여 고용하고 있는 시설의 경우 2020.2월까지 보조교사 지원없이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 가능

※ 시비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선에서 각 자치구별 상황에 맞게 우선순위 선정 가능

❁ 지원조건: 서울시 어린이집관리시스템 및 클린카드 이용 어린이집

❁ 지원인원: 1개소당 1명 지원(보조교사와는 별도 지원 가능)

❁ 지원내용: 1일 4시간(월~금, 주 20시간)근무

인건비 월 871천원(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보조교사/보육도우미 자격 및 주요역할

구 분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비 고
자격조건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특별한 자격요건 없음 ※ 친인척 채용 시 인건비 지원중단	성범죄경력자, 관련법에 의해 자격 정지 된 자 채용 제외
주요역할	· 영유아 보육 보조 · 보육공백 시 대체보육 · 행정사무 및 급식(배식), 청소 등	· 행정사무 및 급식(조리), 청소 등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무로 제한
	※ 운전인력 등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무관한 업무 종사 금지		
근로조건	· 1일 4시간, 주 20시간 근무 ·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시 근무시간대 등 조정 가능(근로계약서 명시) · 연차, 월차 등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준수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지급대상 아님

〈 지원 제외 대상 〉

- 지자체별 지원대상 선정 공고일(안내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2년 이내 행정처분(영유아보육법 제41조에 의한 행정지도·명령 제외)을 받았거나 행정처분 중 또는 행정처분이 예정된 어린이집
 - 다만,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이행한 어린이집은 제외
- 지자체별 지원대상 선정 공고일(안내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2년 이내 행정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이 원장으로 근무하는 어린이집
- '18년도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를 지원 목적과 무관하게 활용하여 인건비 지원 중단된 어린이집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 지원대상

- 원장: 정부지원시설, 서울형어린이집
 - 정부 미지원 직장어린이집: 사업주가 지원기준 범위 내에서 지원
- 보육교사 : 전체 어린이집
 - 특수교사, 치료사, 육아휴직 교사의 대체교사도 해당
 - 민간 어린이집 대표자, 가정어린이집 원장 또는 대표자가 보육교사를 겸직할 경우 처우개선비 지급불가(서울형은 제외)
 - 서울형어린이집 중 원장·보육교사 겸직은 원장으로, 대표자·보육교사 겸직은 보육교사로 처우개선비 지급
 - 동일시설에서 교사로 근무하다가 원장으로 임용된 경우 : 익월부터 원장 처우개선비 지급
 - 동일시설에서 원장으로 근무하다가 교사로 임용된 경우 : 익월부터 교사 처우개선비 지급
- 조리원 : 현원 40인 이상 정부지원어린이집
 - 현원은 신청월 기준
 - ※ 현원이 40인 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에도 감소되는 해당 월까지는 처우개선비 지원
 - 영유아보육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배치기준에 적합하게 채용된 조리원에 한하여 지급
 - 처우개선비를 지급받는 조리원은 평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함

❁ 지원기준

지 원 구 분		지 원 금 액
시 설 장	정부지원시설	월 195,000원
보육교사 (0~5세반)	정부지원시설	월 145,000원
	민간시설	월 200,000원
	방과후교사	월 100,000원
조리원	정부지원시설 (현원40인 이상)	월 145,000원

※ 정부지원시설

- 인건비를 지원하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중 서울형어린이집
- 직장어린이집 중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거나,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

※ 방과후 시설장의 경우, 보육교사 겸직 시에만 처우개선비 지원함

❁ 지원조건

-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기준을 준수하는 어린이집
- 아동 대 교사비율을 준수하고 보육료를 수납한도액 이하로 수납하는 어린이집
- 교사전원이 4대 보험에 가입하고 반편성 기준에 맞추어 반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 (아동 1명이상 보육)

2019

서울시 대체교사 지원사업 안내서

기 획 · 총 괄	이남정(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집 필 진	김희숙(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지원사업팀장) 이수희(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관리자)
감 수	한정화(서울특별시 보육담당관 보육지원팀)
발 행 일	2019년 4월
발 행 인	이남정(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발 행 처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35 연호빌딩 3층
디자인·제작	하늘디자인

* 이 책은 판매용이 아니며, 저작권 및 판권은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있습니다.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시려면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 **서울시**
대체교사 지원사업
안내서